

# '25년 1월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서해안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준법조업 실천합시다!

## □ 지도·단속 방향

- 설 명절 특별단속('25.1.13~24) 및 실뱀장어안강망 특별단속('25.2~)
-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허가 외 어업, 미승인 2종이상 자망사용 등
- 부설형 어업(안강망·통발·자망 등) 어구사용량 초과 사용 조업
- TAC 관련 불법행위(배분량 초과, 사매매 등)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 □ 중점 확인사항

- (자망·통발) 어구사용량 초과, 체장미달 어획물 포획 및 어구실명제 미이행
- (연·근해안강망) 어구사용량 초과 및 불법어구(세목망 등) 사용·적재
- (실뱀장어안강망) 무허가(구획이탈), 불법어구(암해·수해길이) 및 어구실명제 미이행
- (어선법) 어선 불법증·개축, 어선 안전설비 등 관리실태

## □ 위반시 처벌 규정

- 「수산업법」 제40조 무허가(허가구획 이탈 조업 등)
  - \* (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수산업법」 제60조 어구의 규모 위반(불법어구 사용 등)
  - \* (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불법 어구적재
  - \* (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 1차 어업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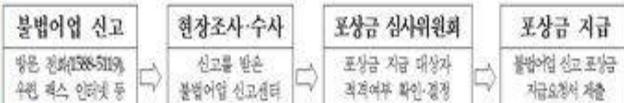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제도



(신고대상) 무허가,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구 과다사용, 금어기, 금지채장 위반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신고방법) 방문, 전화(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포상금 지급금액)

유형	구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기준
사법 처분	징역형	1년이상	300만원
		1년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50 (단상한액300만원, 하한액50만원)	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집행유예	50만원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행정 처분	어업 등 행정처분	취소	200만원
		정지	100만원
		경고	20만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	20만원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기준

# 사건처리 신호등 서비스 안내



✓ 사건처리 신호등이란?  
- 수산관계법령 위반자 대상 단계별 사건처리 진행 사항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확인 방법  
'서해어업관리단' 홈페이지(westship.mof.go.kr) -> 정보공개 -> 사건처리신호등 메뉴에서 확인



## ✓ 사건처리 단계

이름	단속지역	일시	처리상황	위반사항
장수	충청	2021-02-01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
서해	충청	2021-01-31	●	수산법령 제41조제1항
장수	충청	2021-01-31	●	수산법령 제41조제1항
장수	충청	2021-01-31	●	수산법령 제41조제1항

- : 서해어업관리단 처리 중
- : 관할법원 처리 중
- : 처리 완료

✓ 접수 및 처리절차 등 진행사항 문의  
(061)240-7972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